#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0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 허성무·김문수·최민희

이광희 • 윤준병 • 송재봉

이수진 • 전재수 • 김성화

김태선 • 이병진 • 조계워

박선원 · 김병주 · 안도걸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

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균형발 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,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 의 전환, 그리고 글로벌 산업구조의 급변 속에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.

특히,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인공지능(AI) 기술, 미래자동차, 사물인 터넷,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은 대부분 그 근거지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.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, 지역 소멸, 경제 침체 등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,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결국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 (ICT)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 4차 산업혁명 핵 심 기술과의 융합과, 청년 인재 유입 등 산업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고,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 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.

더불어, 글로벌 친환경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, RE100(재생에너지 100%) 이행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시급함. 미국,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RE100 기반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.

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,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기여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,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정부는 인공지능, 정보통신기술,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, 착공 후 4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마.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,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기반조성,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14조).

- 사.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15조).
- 아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연구의 조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- 자.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주거환 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18조).
- 차.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과정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19조).
- 카.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(안 제21조).
- 타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,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25조).

#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고용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,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 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지역국가산업단지"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수도권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.
- 2. "신산업 전환"이란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.

- 3. "고용활성화"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인력의 유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, 청년문화와 신산업이 융합되어 유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·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의 시범실시) 국가는 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 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) 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. 다만,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2장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6조(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
  - ①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- 2.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
  - 4.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계획 등 사업추진계획
  - 5.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
  - 6.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④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전환, 기술의 융합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
  - 2.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
  - 3. 제9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 ·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
  - 4.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5.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
  - 6. 지역 투자 자본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

- 7.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
- 8.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제2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사업에 관한 사항
- 10.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- 11. 그 밖에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또는 위촉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·연구·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사람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에 간사 위원 1명을 두며, 간사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진 기획단장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 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「국가공무원 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-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)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을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및 지원

제9조(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인공지능, 정보통신기술,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착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, 제2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.
  - 1.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
  - 2.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
  - 3. 인공지능, 로봇, 사물인터넷,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역국가산업단지 발전에 관한 시책
  - 4. 첨단기술과 문화공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
  - 5. 산업단지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청년고용활성화에 관한 시책
  -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

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,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,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,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구축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·로봇 산업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산업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·로 봇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지역의 인공지능・로봇 산업 관련 과학기술연구・교육기관 육성
  - 2.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인공지능・로봇 연구・개발인력의 확충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인공지능·로봇 등 첨단학과 설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 책을 신산업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 량 강화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(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) 전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과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도시 전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, 인재 양성, 과학기술 진흥, 교통·물류시설 확충, 문화·관광 육성, 환경 보전, 복지·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,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・재생에너지 개발・기반조성,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사

용하는 에너지를 신·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지역 투자 자본의 확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(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,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)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 재정 건전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 연구의 조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 소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

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3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3.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의 지정,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

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(이하 "학교"라 한다)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,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,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,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
  - 2. 지역 외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·교육·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
  - 3. 그 밖에 지역인재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내용,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9조(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·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국가산 업단지 내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
  - 2.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  - 3.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 · 행정적 지원
  - 4.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) ① 국가 또는

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
- 1.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
- 2.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·허가·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)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  -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

- 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사업에 대하여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 업단지 원활한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・「관세 법」・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・소득세 ・관세・취득세・등록면허세・농어촌특별세・재산세・교육세 및 종 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24조(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 국가는 지역산업균 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25조(지역산업균형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정

- 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과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매년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과 실 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 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 산업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보칙

- 제2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사람은 「형법」 제

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- 1.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- 2.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 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